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0-77
------------	-------

제출년월일 : 2010. 11.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을 행정안전부 지침에 맞게 변경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용어의 정의 명문화,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구체적 명시, 법제처의 법령 띄어쓰기 및 법률 용어 순화 기준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보조금 용어의 정의 신설 (안 제2조)
- 나.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안 제4조)
- 다. 보조금 지원신청서 접수기한 삭제 (안 제5조)
-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을 행정안전부 권고 기준에 맞추어 15명 이내의 심사위원 수를 9명 이내로 변경 (안 제9조)
- 마. 법령 띄어쓰기 및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상의 일부 표현 변경

3. 개정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계획

: 자치행정과-20683(2010. 10. 11)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5.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6. 기타사항

-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151호, 2009.7.30)
- 나. 합의 : 해당사항없음
- 다. 규제 : 해당사항없음
-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0. 10. 14. ~ 2010. 11. 3.(제출된 의견 없음)
 -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3)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를 “「지방재정법」”로, “동 법 시행령 제29의 규정에 의하여”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비”를 “서울특별시 마포구비”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마포구”로, “사회단체(이하 “사회단체”라 한다)”를 “사회단체”로 한다.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단체”라 함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사무소 등 활동근거를 두고, 정관 또는 회칙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사업비”라 함은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경비에 한하며, 인적경비는 단체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 성격의 경비에 한한다.
3. “운영비”라 함은 사무실 및 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 사무원 보수 등 경상적 경비를 말한다.

제3조(총전의 2조)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조를 제4조로 하고, 제4조(총전 제3조)제1항 중 “사업중”을 “사업 중”으로,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17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

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당해년도”를 “해당연도”로,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기본적 경비는 제외한다.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운영비 지급단체 및 비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④ 보조대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해당하는 단체로 한다.
 - 1. 법 제17조,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보조금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
 - 2. 친목 도모 또는 영리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3.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4. 최근 1년 이상 마포구 관내에서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5.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매년 12월 1일까지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20일전”을 “20일 전”으로 하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불가피하다고”을 “불가피하다고”로, “교부 할”을 “교부할”로 하고, 제4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같은 항 제1호 중 “주사업”을 “주 사업”으로 제6호 중 “경비중”을 “경비 중”으로 제9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구청장이”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각호”를 “각 호”로, 같은 항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구청장이”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적정여부”를

“적정 여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3장 제목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 위원회”로 한다.

제7조 중 “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위원회에 부의하는”을 “위원회 토의에 부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심의위원중에”를 “심의위원 중에”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하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주민생활국장

2. 위촉직 위원 : 구의회 의원 2명, 민간전문가·대학교수 · 시민단체 회원 등 사회단체 관련 전문가 중에서 4명을 구청장이 위촉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 중 “다음 각 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해촉 할”을 “해촉할”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기타 현저한”을 “그 밖에 뚜렷한”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년1회”를 “연 1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의”를 “회의를 개최”로 하며, 제3항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통보 받은”을 “통보받은”으로 하고, 제2항 중 “교부전에”를 “교부 전에”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4조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3조에 따라”로 한다.

제15조 중 “분기별”을 “단위사업별”로, “사업연도 개시전에”를 “사업연도 개시 전에”로, “다음회계연도”를 “다음 회계연도”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3조에 따른”으로, “발부”를 “발급”으로 하고,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발부”를 “발급”으로 하며, 제3항 중 “교부지령전에”를 “교부지령 전에”로 한다.

제17조 제목 중 “용도외”를 “용도 외”로 하고, 본문 중 “목적이외의”를 “목적 이외의”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른”으로, “다음 각 호의 1과”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같은 항 제2호 중 “경비중”을 “경비 중”으로, “부분외의”를 “부분 외의”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제2항 중 “사회단체보조금”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다음연도”를 “다음 연도”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20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0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2

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예산의 범위에서”로 한다.

제23조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4조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25조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제3호 중 “교부목적 및 용도외로”를 “교부 목적 및 용도 외로”로 하며, 제4호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9조에 따른”으로 하고,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6조 중 “계리”를 “회계처리”로 한다.

제27조 중 “사항외에”를 “사항 외에”로, “사회단체보조금”을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마포구 재무회계규칙”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지원대상의 제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 제17조, 개별법령 또는 조례에 보조금 지원근거가 없는 경우 2. 제1호에 의거 지원이 가능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3. 친목 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4.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p>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보조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u>다음연도</u>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u>매년 12월 1일</u> 까지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구청장은 사회단체가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매년 <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지원신청서 접수개시 <u>20일전</u>에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p> <p>③<u>제1항의 규정에 의한</u> 보조금 지원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구의 주요시책 수행상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교부가 <u>불가피하다고</u>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관련 사회단체의 장으로부터 보조금의 지원신청을 받아 수시로 <u>교부</u> 할 수 있다.</p>	<p>(삭 제)</p> <p>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 ① 다음 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장.....</p> <p>.....</p> <p>② 제1항에 따른 20일 전.....</p> <p>.....</p> <p>.....</p> <p>.....</p> <p>③ 제1항에 따른</p> <p>.....</p> <p>.....</p> <p>..... 불가피하다고</p> <p>.....</p> <p>..... 교부할</p>

현 행	개 정 안
<p>④ 사회단체의 장이 <u>제1항</u>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한다.</p> <p>1. 사회단체가 영위하는 <u>주사업</u>의 개요 2. ~ 5. (생략) 6.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u>경비중</u>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과 부담하는 방법 7. ~ 8. (생략) 9. <u>기타</u>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p>	<p>④ <u>제1항에</u> 따라 1. <u>주 사업</u> 2. ~ 5. (현행과 같음) 6. <u>경비 중</u> 7. ~ 8. (현행과 같음) 9. <u>그 밖에</u> 구청장이 필요하다고</p>
<p>⑤ 보조금 지원신청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p> <p>1. ~ 5. (생략) 6. <u>기타</u>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p>	<p>⑤ <u>각 호</u> 1. ~ 5. (현행과 같음) 6. <u>그 밖에</u> 구청장이 필요하다고</p>
<p>제6조(보조사업 등의 결정) ① 구청장은 <u>제5조</u>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u>제7조</u>의 규정에 의한 <u>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u>의 심의를 거쳐 신청한 사회단체별로 보조사업 및 보조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p> <p>1. ~ 2. (생략) 3. 보조사업내용의 <u>적정여부</u> 4. ~ 5. (생략)</p> <p>② 구청장은 <u>제1항</u>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6조(보조사업 등의 결정) ① <u>제5조에</u> 따라 <u>제7조에 따른</u> <u>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u>..... 1. ~ 2. (현행과 같음) 3. <u>적정 여부</u> 4. ~ 5.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u> 따라</p>

현 행	개 정 안
<u>제3장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u>	<u>제3장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u>
<p>제7조(위원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에 <u>서울특별시마포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제8조(기능) ① (생략)</p> <p>1. ~ 3. (생략)</p> <p>4. <u>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u></p> <p>②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관계공무원 또는 사회단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보조금을 신청한 사회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u>심의위원중에</u> 심의할 보조사업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p>	<p>제7조(위원회) <u>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u></p> <p>제8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 <u>위원회 토의에 부치는</u></p> <p>② <u>심의위원 중에</u></p>
<p>제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p> <p>③ 위원은 구 본청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구의회 의원 3인</p> <p>2. 민간전문가·대학교수 등 사회단체관련 전문가</p> <p>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제9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삭제)</p> <p>②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어야 한다.</p> <p>1. 당연직 위원 : 주민생활국장</p> <p>2. 위촉직 위원 : 구의회 의원 2명, 민간전문가·대학교수·시민단체 회원 등 사회단체 관련 전문가 중에서 4명을 구청장이 위촉</p>

현 행	개 정 안
<p>④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p> <p>⑤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기타 현저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구청장이 판단한 경우</p>	<p>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p> <p>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그 밖에 뚜렷한</p>
<p>제10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괄한다.</p> <p>② (생략)</p>	<p>제10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총괄</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년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p> <p>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회진흥팀장으로 한다.</p> <p>④ (생략)</p>	<p>제11조(회의 등) ① 연 1회</p> <p>② 회의를 개최</p> <p>③ 1명</p> <p>④ (현행과 같음)</p>
<p>제12조(분과위원회) (생략)</p>	<p>제12조(분과위원회)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② 제1항의 교부지령서에는 보조금의 교부금액, 교부조건 <u>기타</u>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발부하여야 한다.</p> <p>③ 보조금 <u>교부지령전에</u>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p>	<p>②, <u>그 밖의</u> <u>발급</u>.....</p> <p>③ <u>교부지령 전에</u></p>
<p>제17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을 교부결정 내용과 교부조건 및 구청장 지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교부받은 <u>목적이외</u>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u>아니된다</u>.</p>	<p>제17조(용도 외 사용금지) <u>목적 이외의</u> <u>아니 된다</u>.</p>
<p>제18조(사정변경에 의한 결정취소) ①(생략) ② 구청장이 <u>제1항의 규정에</u>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천재지변 또는 <u>기타</u>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u>경비중</u>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u>부분외의</u>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p>제18조(사정변경에 의한 결정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항에 따른</u>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u> 1. <u>그 밖에</u> 2. <u>경비 중</u> <u>부분 외의</u></p>
<p>제19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생략)</p>	<p>제19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 등)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신고) 보조사업자는 <u>다음 각호의 1</u>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 3. (생략)</p>	<p>제24조(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1. ~ 3.(현행과 같음)</p>
<p>제25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보조사업자가 <u>다음 각호의 1</u>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거나 <u>교부목적 및 용도외로 경비를 사용한 때</u></p> <p>4. <u>제19조의 규정에 의한</u>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때</p> <p>5. <u>기타</u>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허위의 보고를 하였을 때</p>	<p>제25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u> 1. ~ 2. (현행과 같음) 3. <u>교부 목적 및 용도 외로</u> 4. <u>제19조에 따른</u> 5. <u>그 밖에</u></p>
<p>제26조(별도계정의 설정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u>계리</u>하여야 한다.</p>	<p>제26조(별도계정의 설정 등) <u>회계 처리</u>.....</p>
<p>제2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u>사항</u> 외에 <u>사회단체보조금</u>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u> 및 <u>서울특별시마포구 재무회계규칙</u>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7조(준용) <u>사항</u> 외 에 <u>사회단체</u> <u>보조금</u> <u>「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u> 및 <u>「서울특별시마포구 재무회계 규칙」</u></p>